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관급자재(교반기(입축형)) 구매”** 납품시 부주의로 인해 기존 시설을 파손(고장)시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당해 기자재의 제작, 납품에 대한 계약이행 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자재 납품일정은 *공사일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과 투입일정을 협의하여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납기일 지연* 등이 없도록 기자재 공급 일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진행 중인 타 공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감독관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및 운영분야에 대해 면밀히 검토 시공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성능보증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시운전 일정은 현장의 시설공사 공정에 따라 공사 감독관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착수 전 시공사와 종합시운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시공사와 공동으로 시운전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 실측 후 실측도면을 반영하여 기자재의 상세제작 및 설치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 할 수 없다. 단, **“조건부 승인”** 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승인”**전에 제작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질, 기술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부합되도록 제작하여 감독관의 공장검사 입회요청 전 자체공장검사 시행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는 공장검사, 현장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인기관 시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7. 시운전 일정은 현장의 시설공사 공정에 따라 공사 감독관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또는 시운전 착수 전 『한국환경공단 감독수행업무매뉴얼의 기자재 성능보증』에 해당하는 품목 및 공사감독관이 이에 준한 성능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자재에 대해서 시공사와 종합시운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시공사와 공동으로 종합시운전 계획(성능보증계획서 포함)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기자재는 제작, 사양, 설치기준을 반드시 “*환경부제정 하수도 설계기준(2025년)*” 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으로 하며 계측기기류는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3호)”* 를 준수하여 그 기준에 맞는 성능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설계, 제작,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및 교육을 포함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품 및 공구류를 시방서에 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요령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시운전 1개월 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종합시운전 완료 후 시방서에 준하여 최종도면,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총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대해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4. **납품기한(설치비포함 기자재는 설치완료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 2027.4.12.(사업준공일, 시운전기간은 납품 완료 후 120일)까지로 한다.** (단, 상기일정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본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조)하고 계약 상대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고시 시준에 의거 안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매월 사용명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미사용 또는 목적 외 사용 금액은 정산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18. 계약 이행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계약금액의 15%)'**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납품완료(또는 설치완료) 검사일로부터 시운전 완료일까지로 한다.